

# ‘저출생’과 젠더관계의 변화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을 향하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배은경 (2019.2.13)

# 질문

- 인간은 어떻게 숫자가 되었으며
- 여성은 어떻게 비난받았는가
- 돌봄(caring)은 어떻게 지워지고 왜곡되었는가
  - 돌봄노동 또는 삶의 재생산을 위한 노동들에 대한 경시 또는 비가시화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 태어날 아이들이 잘 돌보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 바뀌는 국회 언어... 여야 모두 '저출생' 언급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6.13 16:09 | 수정 2020-06-15 11:51 | 댓글 0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서 등장  
8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행정부처는 지난해부터...

여성신문 2020-6-15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일시** 2020년 7월 2일(목)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청 1층 귀빈식당

**“인구변화와 대응”**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前 국회의원)

**5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대표의원 : 남인순 박광온 양금희  
연구책임의원 : 최연숙  
정회원 : 강신우 권연숙 김상희 명성규 설 훈 윤재갑 이학영 이재근  
정정순 홍성국  
준회원 : 강득구 김승수 김영배 민홍철 배진교 서열준 소병철 송욱주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위성근 윤재욱 이명수 이용빈 이용호  
전봉민 전용기 정태호 조명희 추경호 한준호 허은아 홍석준

문의 : 남인순 의원실(02-784-5980) · 양금희 의원실(02-784-7451)

## 애 안낳는 한국, 합계출산율 198개국중 198위

이미지 기자 | 입력 2020-07-01 03:00 | 수정 2020-07-01 08:58

유엔인구기금 조사서 꼴찌는 처음  
0~14세 인구비율도 최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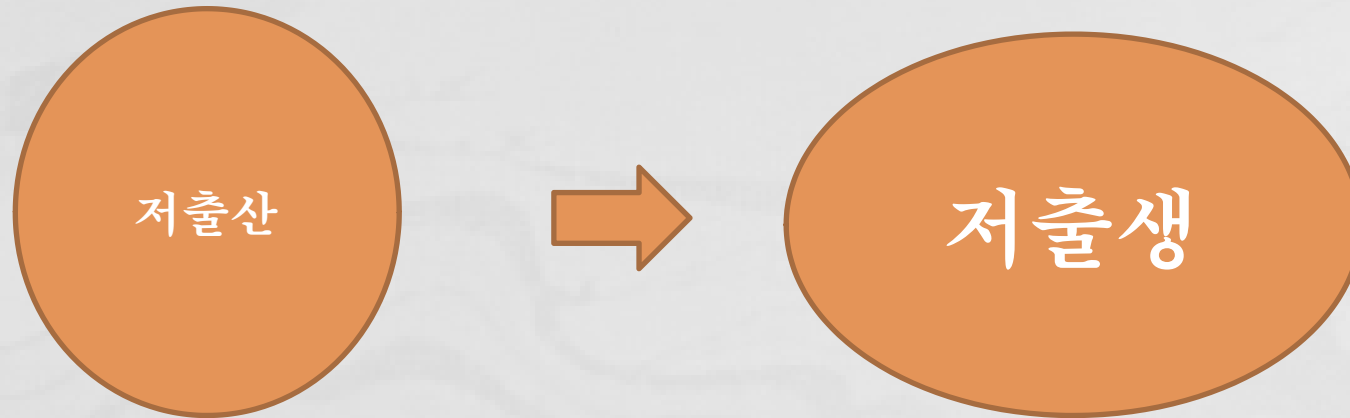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개한 유엔인구기금(UNPFA) '2020년 세계 인구현황보고서(State of World Population)'에 담긴 내용이다. UNPFA가 집계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였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아이의 평균수를 뜻한다.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2020-7-1

# ‘저출생’, 용어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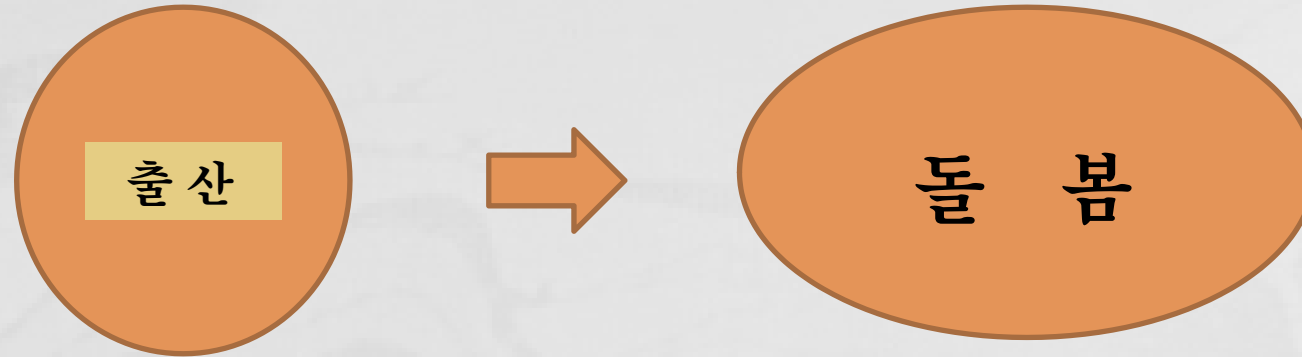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것이 문제

- 개별 여성에게 책임과 부담 전가
-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도구화
- 가족구성과 부모됨에 대한 개인적 결정의 비존중
- ‘청년’과 ‘여성’에 대한 젠더화된 비난

우리 사회에  
아이가 덜 태어나는 것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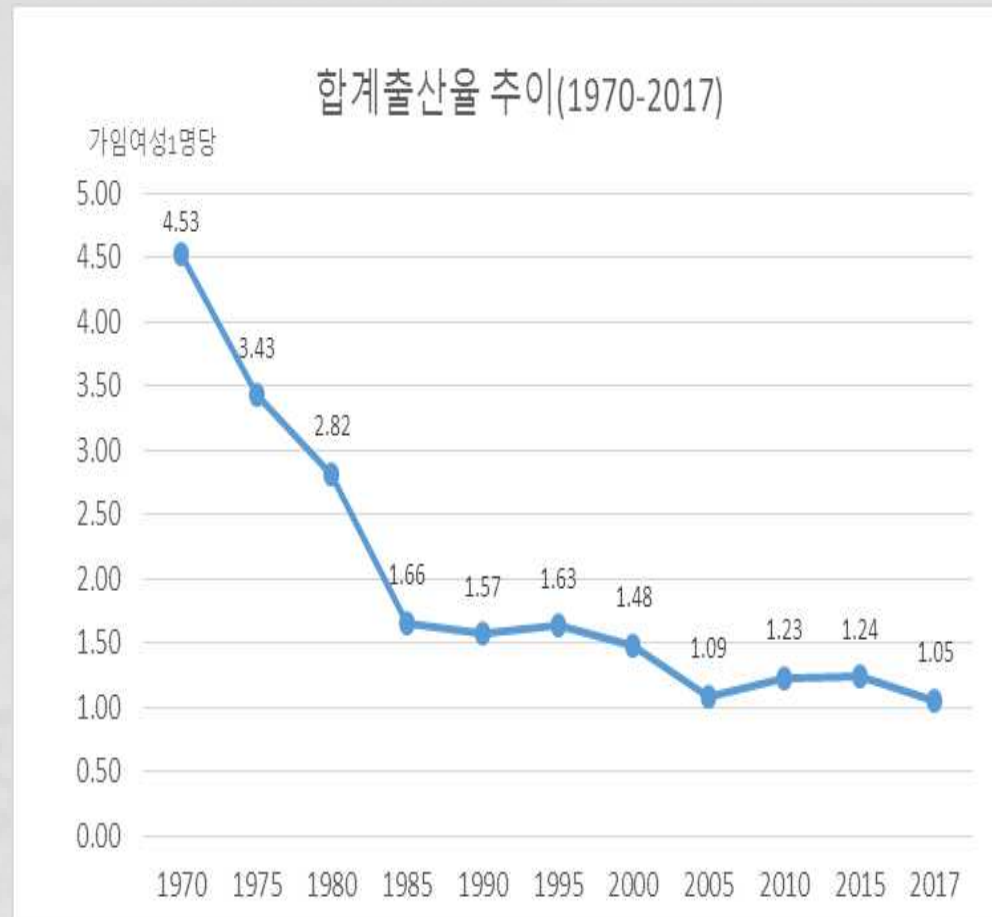
-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부담을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 모두의 책임으로 보자는 제안
- 젊은이들이 부모가 되고 싶어할 만한 사회적 조건 구상 촉구

# ‘저출생’,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 일회적 사건으로서의 출산(labor)
- 정상가족 및 근대적 젠더분업 모델에 기반
- 돌봄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부담’
- 국가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할 뿐
- 출생에서 성장, 성인기, 노년까지 생애 전체
- 부양과 돌봄의 책임공동체로서의 ‘가족’
- 돌봄은 인간 삶의 필수요건이자 윤리적 기초
- 국가는 보편복지로서 돌봄체계의 전체적 운영 책임을 짐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2018년 - 0.98명  
2019년 - 0.92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 출산장려 패러다임의 등장

-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 쇼크
  - 국가경쟁력 저하, 인구감소, 민족 소멸 등 ‘저출산 위기론’ 확산
  - 2004년-2006년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출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작
- 초기 정책 방향 : 출산율 제고로 인구고령화 추세 완화
  - 인구정책을 인구의 규모에 대한 국가관리, 혹은 개별 여성의 출산 횟수에 대한 국가통제로 간주했던 오랜 정책적 관행 반영
  - 출산율 반등은 난망한 목표
    - 오랜 가족계획사업의 여파로 가임여성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감
    - 소자녀 지향이 일반인의 출산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음
    - 정치적 민주화, IMF 위기 이후 경제구조 재편, 일상생활의 신자유주의화와 개인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의 효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의 문제점
  -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 성격 약화
  - 인구 위기의 ‘해결’이라는 환상 유포
    -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장 중요한 생애사건인 부모되기과 연관된 것으로, 단기적으로 그 추세를 변화시키는 것은 힘든 것임
    - 그런데도 정책과 재정투입을 통해 출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구고령화 추세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형성함 -> 이는 선불리 정책의 ‘실패’가 선언되고 불안감이 증폭되는 이유가 됨
    - 정책의 본령이 인구학적 추세 완화와 사회적 적응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점은 지금도 잘 이해되지 않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의 문제점

- 정책 추진의 근거와 정당성 훼손
  - 실증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채 위기 담론을 증폭시킴
  - 주력 출산 연령대인 청년층의 정책에 대한 회의감은 오히려 증폭
-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의 불만과 반감
  - 출산장려 패러다임 + ‘가족 가치’, ‘생명존중’을 위한 캠페인 위주 접근
  - 주력 출산연령대인 젊은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권하는 사회분위기
  - 임신·출산이 여성에게 모성 페널티로 작용하는 한국사회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젊은 여성들에게만 압박 집중

| 〈시사저널〉이 만난 20대의 저출산 관련 ‘말말말’ |                                    |
|------------------------------|------------------------------------|
| 24세 취업준비생 유모씨                | 안 낳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할 세상이니깐 안 낳아     |
| 23세 대학생 홍모씨                  | ‘헬조선’에서 겪는 고통 자식에 대물림하기 싫어         |
| 28세 직장인 조모씨                  |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도 부모로서 죄짓는 것       |
| 26세 직장인 김모씨                  | 국가 입장에서선 저출산 문제지만 나 개인에겐 문제 아니야    |
| 25세 취업준비생 이모씨                | 태어날 내 아이는 나보다 힘들게 노인을 부양해야 하니 못 낳아 |
| 25세 직장인 강모씨                  | 여유가 없어 출산은커녕 연애 생각도 못해             |
| 25세 대학생 문모씨                  | 어차피 일자리 부족한데 인구 줄면 좋은 거 아닌가        |
| 25세 취업준비생 김모씨                | 애 안낳으면 결국 우리가 부담된다는 것 알지만 못 낳아     |
| 21세 대학생 조모씨                  | 아이 낳는 고통 싫어 남편하고만 오붓하게 살 것         |
| 26세 직장인 양모씨                  | 가끔 이대로 계속 저출산하다가 인류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

- “저출산이 왜 문제냐, 인구절벽 위기 공감 못하는 청년들“ (시사저널, 2018년 3월 8일)

# 국가의 실책, 여성들의 저항

2016년 연말, “대한민국 출산지도” 사건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조사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위해 \_\_\_\_월 \_\_\_\_일 \_\_\_\_시에 귀택을 방문하였으나, 적당한 응답자가 없거나 아무도 계시지 않아 다시 방문하고자 하오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처    |           |
|--------|-----------|
| 조사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조사원성명  |           |
| 전화번호   | 010       |

※ 본 조사는 보건복지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 지표 생산을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관련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ihasa.re.kr)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난일 31일 트위터에 올라온 출산력 조사 부재자 안내문. 트위터 캡처

“현관에 떡 붙인 당신은 출산력 조사 대상” (한국일보 201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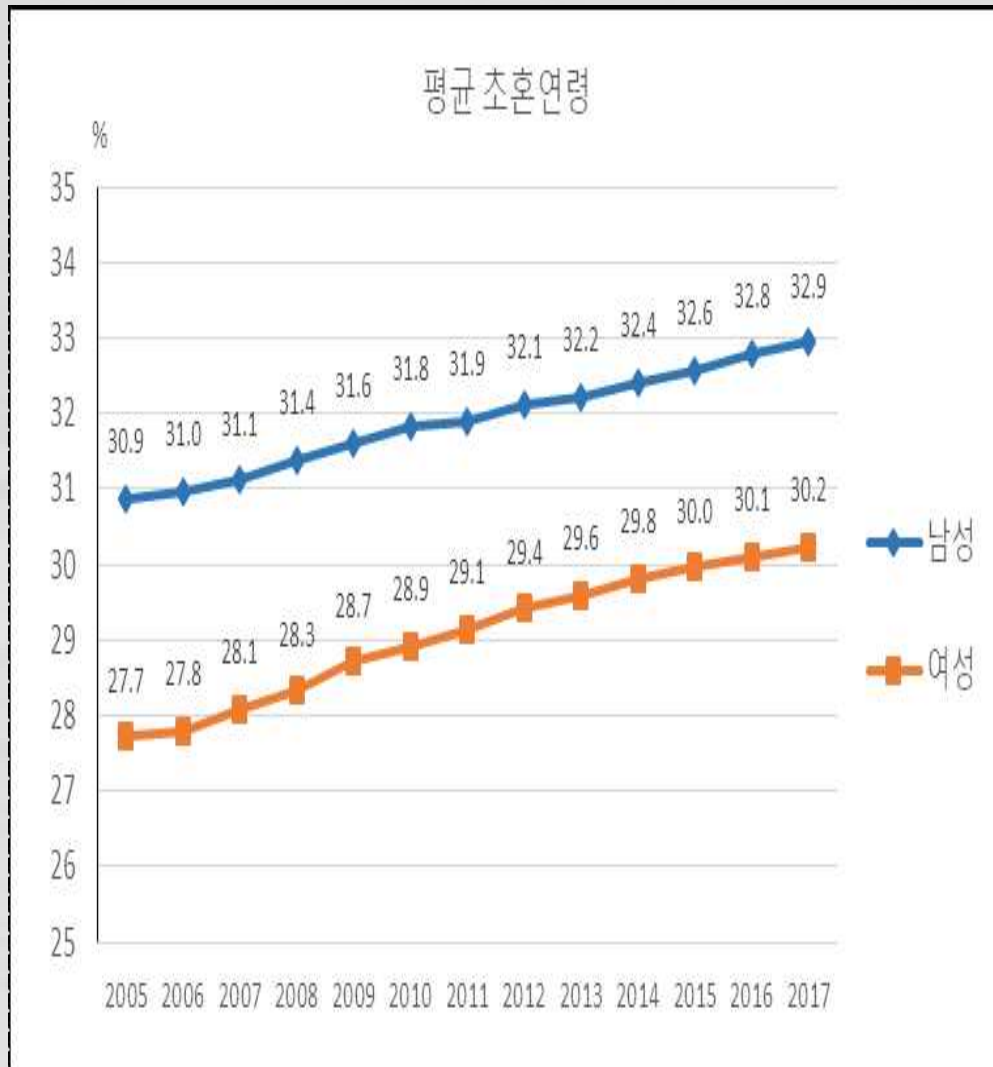
#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삶의 맥락

- 2018년,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 선언

-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현상의 중심에 남녀 개인, 즉 국가정책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함
- 타당하고 현실적합성 높은 방향 전환
  - 모든 '인구학적 사실'은 모든 국민의 생애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적 선택과 생애사건들의 누적된 집합으로 구성되기 때문
- 정책 구체화를 위한 고려사항
  - 인구학적 사실을 구성하는 국민의 생애사건들은 사회적으로 조건화된다
  - 개인의 모든 행위적 선택은 사회구조와 환경 속에서, 그 개인이 관계맺는 사람들과 동원가능한 유무형의 자원들의 영향을 받으며 일어난다
  - 중요한 것은 주권자 개인의 삶의 맥락을 중시하는 것!

# 청년층에서 격화된 젠더갈등?

- 2,30대 청년층에서 성대결 양상
  - 여성혐오(misogyny) 비판과 페미니스트 정체성
  - 역차별 담론, 안티페미니즘 정서, '남성' 정체성의 등장
- 젠더갈등은 언제나 있었으나, 최근 특징은
  - 디지털 매개가 매우 중요하고
  - 정치화된 여성 주체들의 등장 + '페미니즘'의 대중화
  - 언론 등 매체의 왜곡된 담론적 개입
    - '남성혐오', '양성혐오' 등 신조어 생산
    - 정치권, 주류 매체 등에서의 '기울어진 (담론적) 운동장'
    - 구조화된 젠더갈등의 조건을 보지 못하고, 젊은 남녀의 개인적 성향이나 사적인 이성애적 결합의 문제로 축소시킴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한국 여성 평균 초산연령

2017년 31.6세

2018년 31.9세

# 신규출산 가능군(잠재적/현재적 부모 집단)

## ○ 현재의 30대 : 1980년~1990년 출생자

- 고도성장의 과실을 따기 시작한 198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냄
  - ‘풍요 세대’, ‘오렌지 세대’, ‘X세대’
- 소비사회와 대중문화의 전성기인 199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냄
- 1997년 IMF 위기 때 17세~27세 정도 : IMF의 충격이 어느 정도 구조화된 이후 성인기를 보냄
  -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일상화
  - 스펙쌓기와 ‘취준생’, 기러기 가족 등 현상 경험



# 돌봄(Care)

## ○ 돌봄이란?

- 타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역량과 시간을 쓰는 일. 돌봄노동/보살핌노동/수발노동
- 전통적으로 가족내 여성들의 무급 가내노동으로 이뤄짐
  - 비가시화된 / 인정 안된 노동
- 최근엔 공적 노동시장에서 유급노동으로 이뤄지기도 함

## ○ 돌봄이라는 노동의 성격

- “살림”, 살림사는 주부 - 지속적, 반복적, 구속적
- 타자와 자신의 “관계맺음”이 핵심이 되는 노동
  - 타자의 욕구에 의해 지휘되는 노동
  - 감정노동의 성격 - 타자의 감정을 관리해주는 노동

# 돌봄(Care)

- 돌봄노동 수행에 필요한 자질들
  - Responsibility
    - 다른 사람의 need를 읽어내는 능력
    - 그 need를 만족시킬 방법에 대한 지식, 능력
    -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
    - 다른 사람의 need에 끊임없이 응답하는 책임감
  - 신체적 힘, 지식, 감성, 도덕성... 정보력, 관리능력, 경영능력 etc.

# 돌봄(Care)

- 돌봄제공자/돌봄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표상
- 모성예찬
  -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아이를 위해 봉사하는 희생적인 모성에 대한 예찬
  - 어머니를 이타심, 자기희생의 화신으로 찬미
  - 자아주장, 인정요구 등을 모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표상
- 모성 이데올로기
  - 모든 여성들은 어머니노릇에 적합하며, 적합해야 하며, 그것도 그렇게 타고 났다는 것
  - 돌봄을 여성성의 하나로 보는 시선

# 돌봄(Care)

- 돌봄제공자/돌봄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 “돌봄”을 하는 사람은 보조자, 후방 지원자로 간주됨
- 돌봄의 능력 = 여성성, 여성들의 자연적 속성으로 간주됨
  - ‘여성적 리더십’ : 배려적, 관계 중심적  
cf. 기존 리더십 : 통제적, 지시적, 성과 중심적
-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로서의 유급돌봄노동

# 자녀의 의미 변화

전근대사회

노동력  
확보,  
권력  
자원

‘며느리’

압축적 근대화  
산업사회

‘교육열’

- 국가의  
경제발전
- 가족의  
계층상승

- 자녀  
양육/교육의  
노후보장  
기능

도구적 모성

탈근대  
신자유주의 사회

- 무한경쟁의 격화 속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교육투자의 대상  
: 시대정신으로서의 불안
- ‘스펙쌓기’의 시작 연령이 무한히 낮아지고,  
기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 더 비싸고 더 과학적·효율적인  
육아 및 교육상품 소비
- 교육투자가 부모에게 되돌아오지 않음

‘매니저맘’, 소득획득을 통한 모성실천

# 부모의 역할 변화

-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 → 2인 소득자 모델
  -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등 고용불안 증대
  - 가족임금 family wage 체제 붕괴
  - 다수의 가족 소득을 결합하는 가구경제의 형태로  
⇒ '근대적 젠더분업'의 균열, 전환
- '돌봄의 공백' 발생 → 돌봄의 탈가족화로 대응
  - 돌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없음 : 돌봄노동의 저평가, 비가시화
  - 돌봄의 탈젠더화는 이뤄지지 않음 : '여성'의 속성과 책무로서의 돌봄
- ※ 근대적 젠더분업 breadwinner-housewife
  - 1개의 생계부양 일대기 + 1개의 평생 가사노동 일대기의 결합(Beck, 1999)  
⇒ 산업사회의 "봉건적 중핵"

# 고도성장기 한국의 젠더관계

- 1970년대 중반, 가족임금을 획득한 일부 노동자 계층 등장 -> “근대적 전업주부”
  - 1960년대 노동운동: 미혼의 여성노동자 중심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년~)으로 중화학공업화 시작: 노동운동 중심이 대기업 남성노동자로
- 기혼여성의 노동력화
  - 1980년대부터 본격화. 좋은 일자리(decent work)에는 90년대 중반 이후
  - 노동시장의 결혼장벽(marriage bar)은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8년) 때에야 불법화됨.

# 1960-70년대



# 1960-70년대



# 1980년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예요” 삼성전자 광고(1990년)



87년 6월 18일, 최루탄 추방대회에서 이 여성들은 **삼베수건**을 쓰고 최루탄 발사기를 든 전경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다.



## 1980년대



1982년 9월호 <주부생활> 표지



1986년 1월호 <자녀교육> 표지

# 1990년대: 소비사회 진입기의 젠더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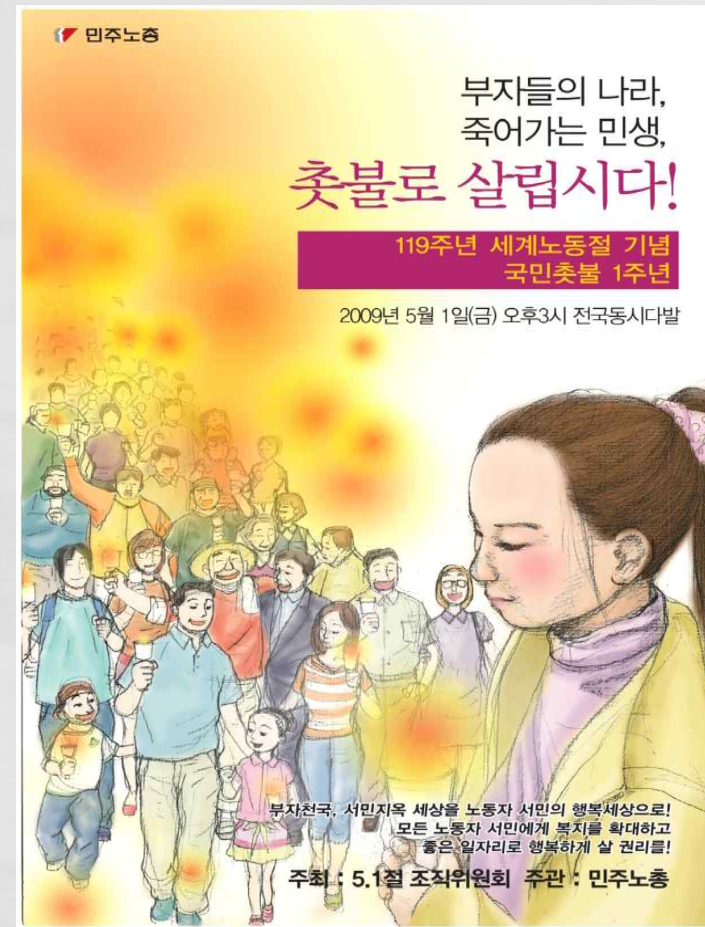
# 1990년대: 소비사회 진입기의 젠더관계



# '97년 이후 한국 젠더관계의 변화



1999년 제 109회 노동절 기념 포스터



2009년 제 119회 노동절 기념 포스터

# 지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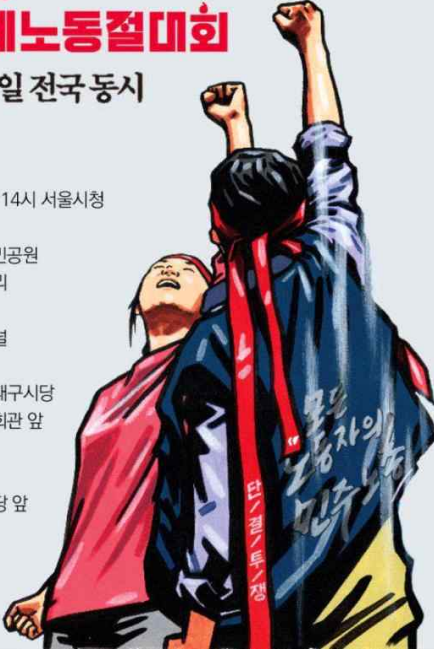
노동개악 저지!  
ILO협약비준 · 노동기본권 쟁취!

## 투쟁행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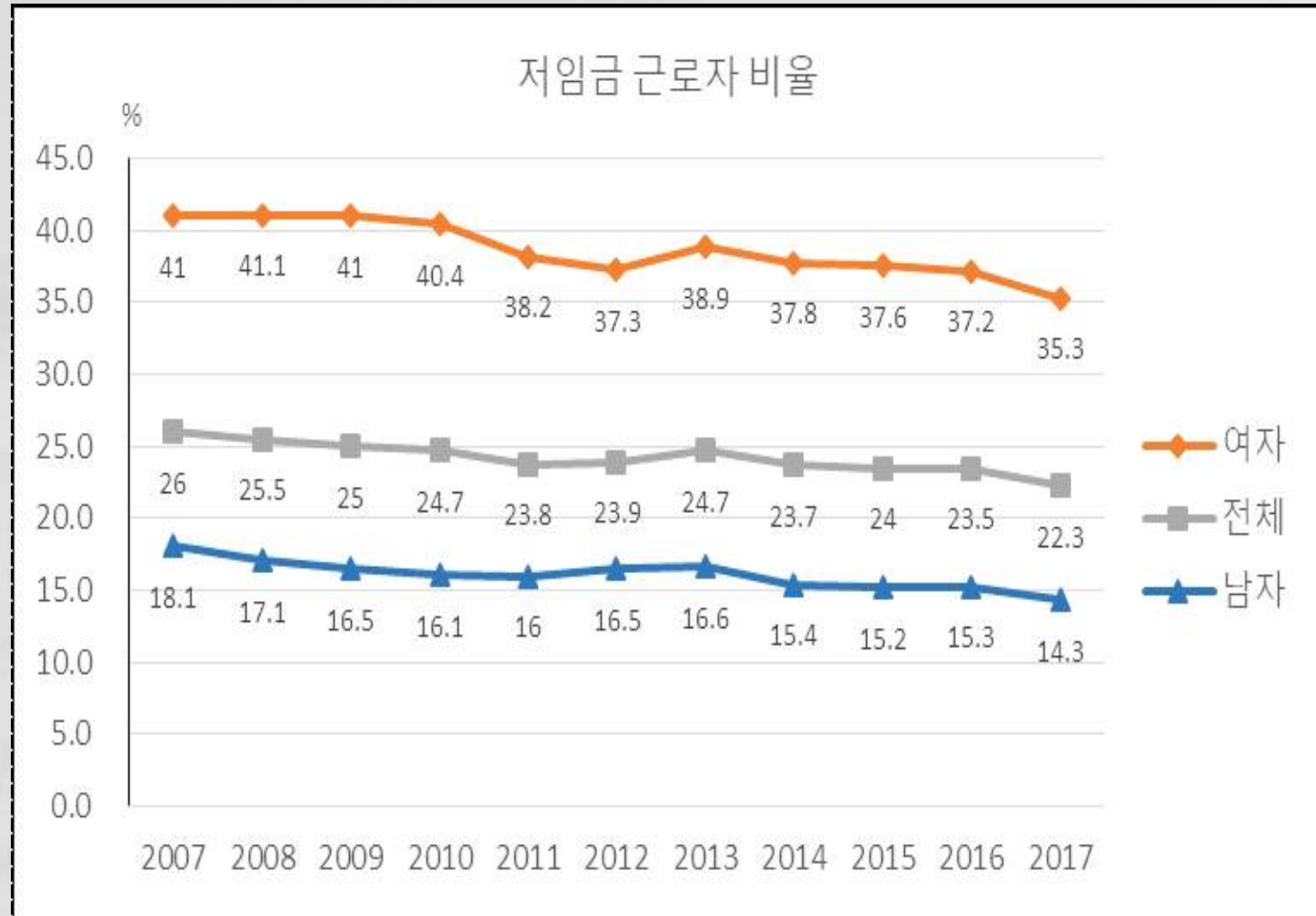
2019  
세계노동절대회  
5월 1일 전국동시

수도권 (서울,경기,인천,강원) 14시 서울 시청  
충북 14시 청주체육관 앞  
대전 10시30분 서대전시민공원  
세종충남 11시 천안 아우리  
전북 13시 전주세이브존  
광주 15시 유스퀘어 터미널  
전남 시군 지부별  
대구 15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경북 14시30분 포항협력회관 앞  
부산 14시 서면  
울산 14시 울산시청  
경남 15시 민주당 경남도당 앞  
제주 14시 제주시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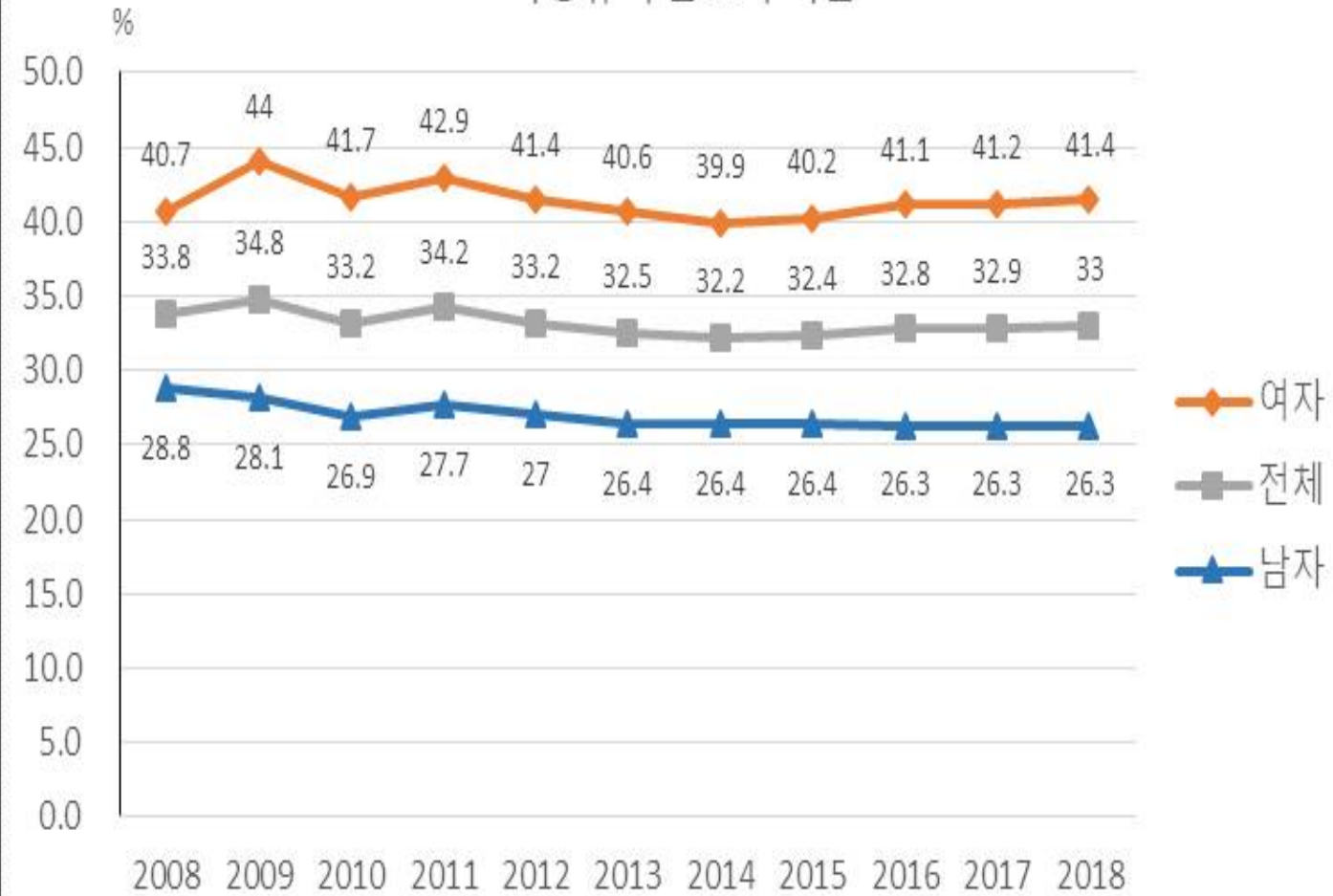
# 성별 임금격차



주: 저임금근로자비율 =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수 ÷ 전체 임금근로자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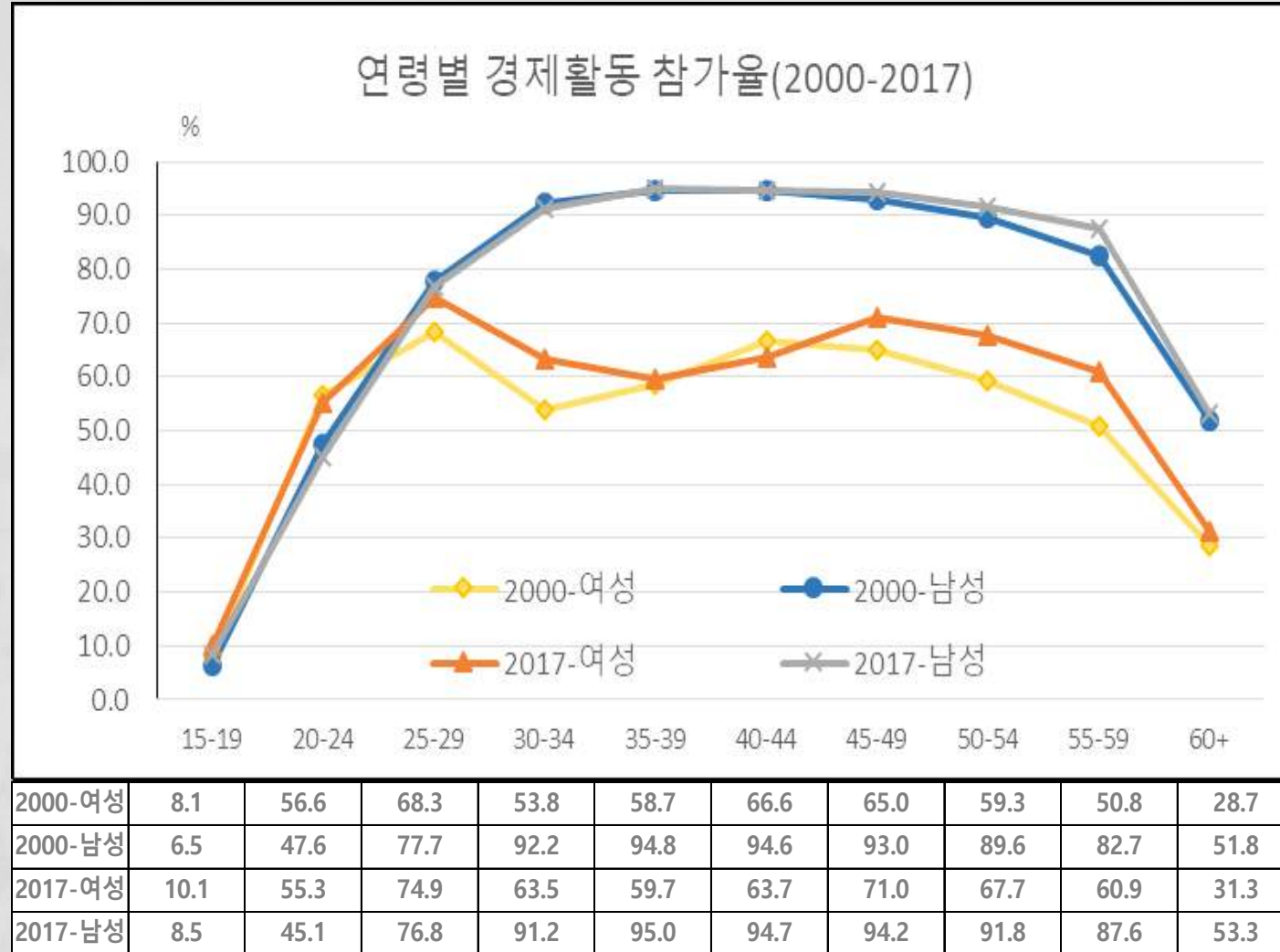
출처: OECD, 「<http://stats.oecd.org/>,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2018. 08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10월

# M자 곡선/역 U자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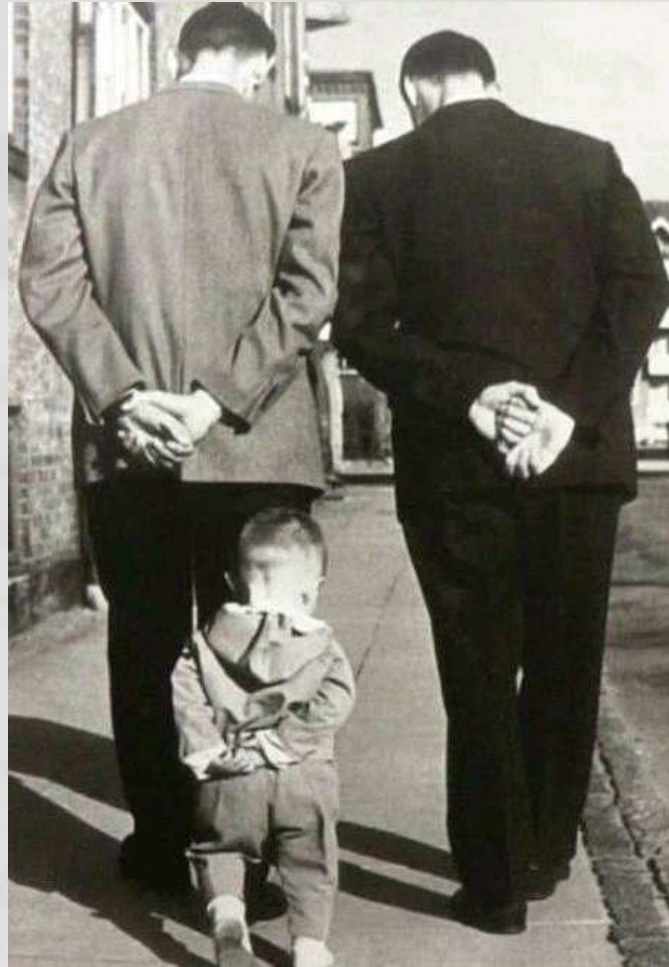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줌인]커리어 우먼→ 프로 주부...  
신세대女 사표내고 살림-재테크



동아일보 2003.5.29

# 남성성의 모델은?



# 남성성의 모델은?



# 여성성의 모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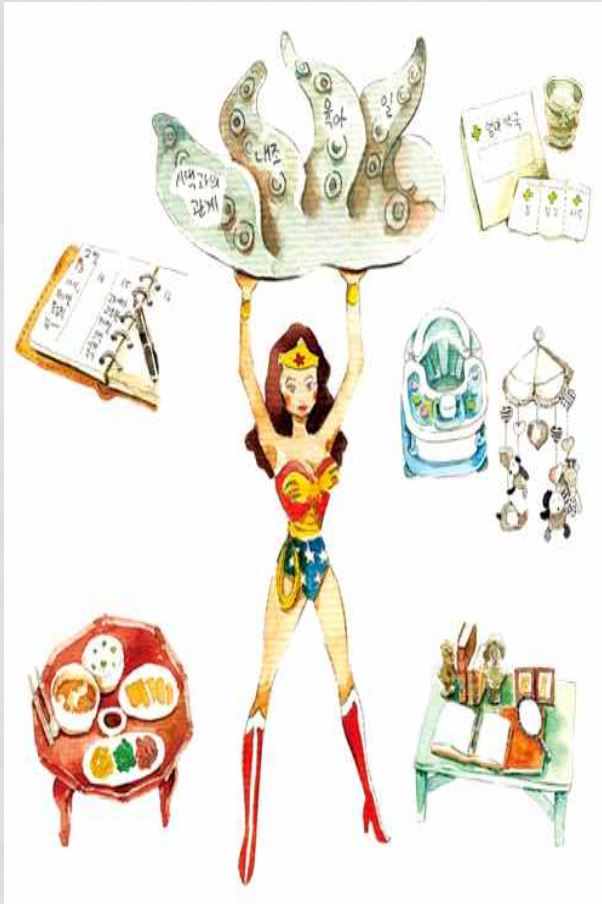
# 젊은 남녀의 결혼 촉진?



일자리와 집을 주면 결혼할 것  
인가? 결혼만 하면 출산을 할 것인가?

- 가족구성과 부모되기에 대한 개인  
의 의사결정과 그 맥락들

# 젊은 남녀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려면



- coupling과 삶의 재생산에 대한 합의된 '이상'이 없다. 개별 여성의 협상력과 커플의 '협상'에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가?
- 권위적 관계맺음을 거부하고 상호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 -> (좌절) -> 돌봄과 관계맺음 그 자체에 대한 거부나 외면 위험



# 과제1: ‘가족’과 ‘돌봄’의 의미 재구성

- 가족 = 혼인과 혈연/입양으로 이뤄지는 사회의 기본단위?
  - 두 사람의 이성애적 섹슈얼리티와 그에 기반한 친밀성이 출발점
  - 부모되기과 부모노릇을 혼인에 수반되는 당연한 것으로 자연화
  - 법률혼과 혼인관계 내에서의 부모되기에 국한
  - ‘정상가족’과 ‘표준가족’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벗어나기 어려움
- 가족 = 경제적 부양과 돌봄의 책임과 의무를 상호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 가족구성의 계기를 다양화할 필요 – “생활동반자” 개념 등
  -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상호부양과 상호돌봄의 공동책임이 있음
  - 가족생활을 자연화, 사소화하는 사고의 습관에서 탈피

# 과제1: ‘가족’과 ‘돌봄’의 의미 재구성

## ○ 돌봄 = 인간적 삶의 기본 요소

- 돌봄노동은 관계맺음과 생명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인간 활동
- 타인에 대한 예의주시와 스탠-바이까지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활동
- 타인에 대한 돌봄관계 속에서 돌봄제공자까지 성장하고 성숙

## ○ 돌봄사회로의 전환 = 돌봄의 인정과 돌봄관계의 제도화

- “돌봄”의 탈가족화/탈젠더화
  - 유급돌봄노동의 확대와 ‘좋은 일자리’로 전환
  - 무급돌봄노동의 남녀공유를 위한 다양한 노력
- 돌볼 권리와 돌봄 받을 권리 모두 인정
- 고립과 경쟁, 갈등으로부터의 탈피

## 과제 2: 새로운 사회적 합의 창출

### ○ 젠더 관계에 대한 사회적 협약의 갱신

- 일상생활과 노동시장에 엄존하는 성차별과 젠더격차에 대한 인식
- ‘평등한’ 관계맺음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학습이 필요
- 세대내 소통 뿐 아니라 세대간 소통이 매우 중요

### ○ 지속가능한 ‘삶의 재생산 체계’ 구축

- 노동시간과 생활시간, 자원 배분과 공간 체계 모두를 유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 돌봄노동과 여성노동에 대한 경시 타파
- 화폐로 환원되지 않는 관계맺음의 장면과 실천에 집중
- 남성성의 모델 다양화와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과제로 인정

◉ 감사합니다

피에서 문화로, 가족에서 사회로:  
가족, 국적과 성원권의 젠더 정치<sup>1)</sup>

충북대 사회학과 박정미

1. 서론

지난 5월 27일, 통계청은 2020년 3월 출생아 수가 24,378명으로 작년 3월 대비 10.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5,879명으로 5개월 연속 출생아 수를 앞질렀고, 따라서 올해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sup>2)</sup> 통계청이 4년 전만 해도 2032년으로 예측했던 인구의 자연감소 시점이 무려 12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sup>3)</sup> 이러한 경향이 과연 역전될 수 있을까? 출산율 추이만 보면 비관적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1983년 2.06을 기록한 이래 단 한 번도 대체출산율인 2.1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9년 0.92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출산율 하락은 40년 가까이 지속된 장기 추세로,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완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추세가 쉽게 반전될 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정부 부처는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서 ‘다문화가족’에 주목한 바 있다. 일례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에서 다문화가족이 “특히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억제기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김정선, 2011: 225). 다문화가족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높다는 사실은 그러한 기대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출산율은 전체 평균보다 조금 낮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출산율은 더욱 낮다. 연구자들은 이주민들이 처한 조건과 지위의 불안정성, 사회적 연결망의 부족, 남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더욱 심각한 사회적 편견이 이들의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김두섭, 2008; 김현식, 2015).

그럼에도 출생아 수의 급감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출생아 비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2.9%(13,443명)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 5.5%(18,079명)로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19). 또한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정부에 등록한 외국인의 수는 1992년 약 6만6천 명에서 2018년 약 125만 명으로 약 20배나 증가했고, 미등록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전체 장기 체류 외국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주 배경 아동’(children with migration background)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4)</sup> 이처럼 한국 영토 내에 이른바 ‘순수 한민족 혈통’이 아닌 주민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정체성을 뒷받침해왔던 ‘단일민족’ 신화의 불가능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원권에 관해 새로운 고민을 제기한다.

1) 미완의 원고이므로, 필자의 허락 없이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1분기 출산율 0.9명...“올해 인구감소 시작될 듯”」. YTN. 2020. 5. 28.

3)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통계청 보도자료. 2016. 12. 7.

4) ‘이주 배경 아동’은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설립한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본인이 직접 이주의 경험이 있거나 부모가 이주의 경험이 있는 아동을 지칭한다. 이주 배경 아동에는 다문화가족 아동, 결혼이민자 등의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북한이탈 아동, 재외국민 아동, 외국 국적 재외동포 아동, ‘재한외국인’ 아동, 비합법체류 외국인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난민 지위 인정자 또는 신청자의 자녀 등이 포함된다(신윤정 외, 2018: 7-24).

그런데 한국에서 단일민족 신화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시점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급증한 1990년대 중반부터가 아니라 그보다 반세기 전이다. 균열의 진앙지는 ‘혼혈인’, 특히 주한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의 결합으로 출생한 사람들이었다.<sup>5)</sup> ‘혼혈인’은 한국인의 단일혈통 이데올로기와 부계중심주의의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수치로 낙인찍혔다. 그 결과, ‘혼혈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입양 및 이민 정책을 통해 사실상 해외로 추방되었고, 입양과 이민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이들은 가혹한 낙인과 차별을 겪으며 살아왔다. 반면 정부는 ‘혼혈인’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입양과 이민을 처방하는 대신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발생한 것일까? 미군의 주둔으로 미국계 ‘혼혈인’이 등장하기 시작한 1946년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이 입안된 2006년 사이의 60년이라는 시차는 혼혈인 정책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기에 일견 충분해 보인다. 그동안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 정치적 민주화와 인권의 진보를 이룩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사회는 ‘혼혈인’과 달리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혼혈인’ 정책과 다문화가족 정책은 전혀 다른 것인가? 다시 말해 양자의 연속성 또는 유사성은 없는가? 어쩌면 오히려 그러한 연속성으로 인해 ‘혼혈인’ 정책에서부터 다문화가족 정책으로의 전환이 신속하고도 매끄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에 충분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혼혈인’ 정책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계보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가족, 국적과 성원권의 관계다. 시민권 연구자 브루베이커(Roger Brubaker)는 국적(legal nationality)과 민족(/국민) 성원권(nation membership)을 구분한다. 국적은 공무원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부여하는 반면, 민족(/국민) 성원권은 일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우리’와 ‘남’을 구별하는 암묵적 지식에 기초하여 부여한다. 양자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불일치는 현실에서 다양한 긴장을 초래한다(Brubaker, 2010: 65). 서류상 국민이라도 외모나 언어, 행동이 ‘우리’와 다르면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적이라는 법적 신분이 자동적으로 일상적 성원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혼혈인’과 다문화가족 출신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적과 성원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긴장에 노출되어왔다.

요약하자면 이 논문은 ‘혼혈인’ 가족과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가족, 국적과 성원권의 관계를 분석하는 역사사회학적 연구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이 논문은 국적과 성원권에 내포된 포함과 배제 논리의 기초이자, 국적과 성원권 간의 긴장의 진원지가 한국의 지배적인 가족 이념, 곧 부계제, 법률혼주의, (부계)혈통주의임을 규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혼혈인’ 가족과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여러 곤란은 그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하려는 시도, 곧 한국적 가족 이념에 끼워 맞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한국적’ 가족 이념과 그것에 기초한 성원권을 근본적으로 성찰할 때에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 2. ‘혼혈아’, 시민이 될 수 없었던 아동

### 1) ‘혼혈’이라는 ‘원죄’

5) 2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바와 같이,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혼혈’, ‘혼혈아’, ‘혼혈인’이라는 용어에는 심각한 낙인이 부여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 용어들을 역사적 범주로 사용하되, 그러한 낙인을 감안하여 따옴표를 붙인다.

‘혼혈’은 문자 그대로 피가 섞였다는 의미로, ‘혼혈아’와 ‘혼혈인’은 인종이 다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 사람을 일컫는다. 인류가 끊임없이 이동하고 이합집산을 거듭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모든 인간이 ‘혼혈’이다. 실제로 인종을 구분하는 확고하고 합의된 기준은 부재하고, 최근의 유전학은 인종의 생물학적 근거를 부정한다. 한 마디로 인종은 생물학적 실체라기보다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구성물이라는 것이다(Wade, Takezawa, and Others, 2020). 그럼에도 ‘혼혈’이라는 용어는 ‘순혈’을 전제함으로써, ‘혼혈’이 아닌 이들은 모두 ‘순혈’이라는 허구적 이분법을 생산한다. 이렇듯 ‘순혈’과 ‘혼혈’은 우리와 남, 다수자와 소수자를 분할하고 차별하는 지식과 권력의 체계로 작동해왔다.

그런데 ‘혼혈’이 언제나 반드시 부정적인 함의를 내포했던 것은 아니다. 일제시기 일본의 우생학자들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혈아’가 체격과 지능의 측면에서 부모가 모두 일본인 또는 조선인인 아동보다 열등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더욱 우수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생학자들은 특히 ‘외지’, 곧 식민지나 점령지에서 ‘혼혈아’ 출산을 장려했다. 현지인과 일본인의 결합은 그 지역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일본인, 곧 ‘혼혈 일본인’을 증가시킴으로써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맹주로 자임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김정선, 2017: 362-384).

반면 해방 후 새롭게 등장한 ‘혼혈아’, 그중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에 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군이 점령한 지 1년여가 흘러 미국계 혼혈아가 태어나기 시작한 1946년 말, 연세대 의대 생리학과 교수 이병희는 우생학적 관점에서 ‘혼혈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혼혈아를 보면 조선 여자와 흑인 또는 백인과 사이에서 난 것으로 그중에서 흑인과의 혼혈아는 대부분이 계승할 형질이란 것이 열악할 것은 이상에 말한 흑인의 지능 정도와 범죄적 사실에 비추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며 더욱이 이와 같이 외국 군인과 불의의 교접을 한 조선 여자의 소행이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양친의 불의적 임시접합에서 나온 혼혈아의 형질이란 대부분이 저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sup>6)</sup>

인용문은 ‘혼혈아’가 우생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다른 인종과 결합한 결과, 특히 저열한 흑인의 형질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군인과 불의의 교접을 한 조선 여자의 소행”을 통해 출생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처럼 ‘혼혈아’에는 이중적 낙인, 곧 아버지의 인종과 더불어 어머니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가 부착되었다. 이러한 시선은 ‘혼혈아’를 “허영과 악덕의 인과,”<sup>7)</sup> “무질서한 자유와 남녀평등이 비저낸 동양 부도[婦道-인용자]의 탈선보,”<sup>8)</sup> “생활난과 부녀 도덕의 부패”<sup>9)</sup> 등으로 규정한 신문기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한민족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졌던 흑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 선망과 열패감을 안겨주었던 백인의 자녀도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원시 되었던 것은, 낯선 인종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여성 혐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임신의 경로, 다시 말해 어머니가 강간을 당했는지, 미군과 연인 또는 부부 관계였는지, 성을 팔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혼혈아’의 피부색과 외모는 그들을 낳은 어머니의 ‘타락’을 입증하는 절대적인 표식이었을 뿐이다. 모든 인간이 부모의 성관계를 통

6) 「우생학적 견지에서 본 혼혈아와 유전」, 『조선일보』, 1946. 12. 1.

7) 같은 글.

8) 「노랑머리, 검둥이 혼혈아의 범람」, 『동아일보』, 1947. 8. 27.

9) 「혼혈아 등 기아 격증 3개월에 30여건」, 『조선일보』, 1947. 9. 27.

해 잉태됨에도 불구하고, ‘혼혈아’는 구별되는 외모로 말미암아 그러한 ‘원죄(原罪)’를 더욱 가혹하게 짊어져야 했다.

이렇듯 미군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은 극렬하게 비난받았지만, 동시에 국가 안보에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한국전쟁기 정부는 유엔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숙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안소’를 설치했고, ‘위안부’가 성병을 전파하지 않도록 검진과 치료를 강화했다(박정미, 2011; 박정미, 2019). 휴전과 더불어 미군이 장기 주둔하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친히 미군 기지 주변에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동 지역에는 공개 외국인용 땀싱글을 허가”하도록 명령했다(총무처, 1955; 박정미, 2015: 10-11). 한국 정부는 ‘위안부’가 미군에게 안전한 쾌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혼혈아’ 출산의 가능성을 억제하고자 했다. 1957년 7월 1일 유엔군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한 직후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유엔군 접대부(세칭 위안부)”의 성병관리책과 더불어 “혼혈아 대책”으로서 “산아제한”을 강조했다(총무처, 1957). 한국 정부에게 ‘위안부’는 성교하면서도 출산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위안’만을 독려하고 출산은 억제하려 했던 정책은 실현 불가능했다. 정부는 ‘위안부’에게 강제 등록, 검진, 치료를 실시했지만, 산아제한을 강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극심한 낙인에도 불구하고, ‘혼혈아’는 지속적으로 태어났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9월 정부가 집계한 “외국인과 한국여성 간에 출생한 혼혈아동 수”는 356명이었고,<sup>10)</sup> 1968년 1,623명에 이르렀다(김동심 외, 2003: 41). 이 수치는 해외로 입양된 아동을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분 노출, 낙인과 차별의 공포로 인해 과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실제 한국 영토 내에서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혼혈아’가 몇 명이나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2만에서 6만 명 사이라는 추정치가 있으나 근거는 불명확하다(박경태, 2016: 205-206).

## 2) 법의 낙인, 불완전한 성원권: 삼중으로 ‘예외인 자’

한국인 여성이 미군과 혼외 관계에서 출산한 ‘혼혈아’들은 출생신고와 국적 취득 과정에서부터 곤란을 겪었다. 출생신고 관련 사항은 호적법이, 국적 취득은 국적법이 규정했다. 그런데 호적을 기재하는 호적부(戶籍簿)는 존재한 반면, 국적을 기재하는 국적부(國籍簿)는 부재했다(정주수, 1989). 따라서 국적은 호적을 매개로 취득할 수 있었고, 그 방식은 출생신고 또는 귀화였다. 그런데 호적을 편제하는 원리가 바로 민법이 규정한 호주제였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신분 변동을 기록한 호주제는 남성우월주의와 부계제를 법적으로 구현했다. 국적법 역시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그 결과, 생물학적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대개 혼외 관계에서 출생한 ‘혼혈아’는 오직 예외적으로만 가족과 국가의 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관련 조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민법에서 자의 입적, 성과 본에 관한 제781조의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부계제(patrilineage)를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부가(父家)에 입적할 수 없는 이들도 존재했고, 2항과 3항은 그들을 위한 보충조항이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하고(2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해야 했다(3항).

다음으로 민법 제782조는 ‘혼인 외의 자’의 입적을 규정했다. 따라서 제781조는 비록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혼인 중의 자’의 입적을 규정한 것이고, 제782조는 그것을 보충했음을

10) 「혼혈아 중에 기아 다수」. 『경향신문』, 1952. 9. 22.

알 수 있다. 제782조의 1항은 “가족이 혼인 외의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그 가”는 부가이고,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자는 다시 2항에 의거하여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은 <호적법> 제49조와 연동되었는데, 이에 따라 출생신고서에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2항 5호)과 더불어 “자의 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이 기재되었다(2항 2호). 1960년 호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출생신고 관련 사항은 인구조사법의 하위법령인 인구동태조사령시행규칙(1950년 제정)이 규정했는데, 당시 출생신고서 8항 “출생아 신분”은 “적출자, 서자, 사생자”를 구분하도록 했다. 이러한 구분은 일제시기 메이지 민법을 따른 것으로,<sup>11)</sup> <호적법> 제정 이후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로 이원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자격은 국적법이 규정했다. 국적법 제2조 1항과 2항은 각각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명시함으로써, 부계혈통주의(paternal jus sanguinis) 원칙을 확립했다. 부계제 가족제도가 국적 취득 조건에도 반영된 것이다. 3항과 4항은 그러한 원칙에서 벗어난 자들을 포함하기 위해, 각각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에게도 국민의 자격을 부여했다.

이처럼 부계제, 법률혼주의,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호적과 국적 체계는 국민을 출생 신분, 곧 가족관계에서의 위치에 따라 위계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위계의 최상층에는 ①부가 입적하여 부의 성과 본을 따른 혼인 중의 자가 위치했고, 그 아래에 ②부가 입적하여 부의 성과 본을 따른 혼인 외의 자, ③모가에 입적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른 혼인 외의 자, ④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 자가 차례로 배치되었다. 이 모든 경우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었으나, ①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비정상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그러한 낙인은 아래로 갈수록 강화되었다.

한국인 여성과 미군의 혼외 관계에서 출생한 ‘혼혈아’는 원칙적으로 ③에 해당했고, 이러한 처지는 자녀에게는 ‘사생자’ 또는 ‘혼인 외의 자’라는 낙인을, 어머니에게는 혼외 출산자라는 낙인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에 일부 어머니들은 그러한 낙인을 피하고자 다양하고 눈물겨운 편법들을 구사했다. 자신의 가(母家)의 호주, 곧 외조부나 외숙부의 동의를 얻어 자녀를 그의 ‘혼인 중의 자’로 신고하거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남편의 동의를 얻어 그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인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 및 그 어머니의 처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혼혈아’의 경우, 앞서 언급한 ‘신분 세탁’ 방법으로도 결코 감출 수 없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혈통이었다. 국적법은 국민 자격의 정통성을 부계혈통으로 적시했다. 그러므로 ‘혼혈아’는 모계가 한국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로서 정통성을 결여한 예외적 존재였다. 역으로 ‘혼혈아’는 아버지가 분명할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려웠다. 아버지인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다(국적법 제12조 6호). 따라서 ‘혼혈아’의 국적은 친부인 미군의 인지를 얻기 전에 부여된 임시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영구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친부의 인지를 얻는 데 실패해야 했다. 한마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혈아’는 “너무나 외모상으로 뚜렷이 판별되는”<sup>12)</sup> 혈통을 남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었다. 그들의 외모가 어머니의 ‘타락’을 증명하는 표식이었다면,

11) 일본의 메이지 민법에서 적출자, 서자, 사생자 범주가 확립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홍양희(2014) 참조.

12) 「형설수설」, 『동아일보』, 1959. 4. 23.

그들의 한국 국적은 아버지의 ‘유기’를 증명하는 표식이었던 것이다.

‘혼혈아’ 어머니의 지위 역시 유사했다.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에게는 국적을 부여한 반면(제3조 1호),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을 박탈했다(제12조 1호). 그러므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원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5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귀화 절차(제5조)를 거쳐야 했다. 따라서 한국인 아내가 외국인 남편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원리는 여성이 결혼하면 부가에 입적하는 호주제와 동일했다. 한 마디로,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할 경우 ‘출가외국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여전히 한국 국적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혼외 출산자’로서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의미했다.

이렇듯 ‘혼혈아’는 원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될 수 있었지만, 완전한 성원권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국적 취득은 호적을 매개로 이루어졌으므로, 출생 신분에서 따라 성원권이 위계화되었기 때문이다. 부계혈통주의, 법률혼주의, 부계제에 입각한 국적법, 민법, 호적법은 ‘혼혈아’를 삼중으로 예외적인 자, 곧 ‘한국 혈통(아버지)이 아닌’ ‘혼인 외의 자’로서 ‘모의 성과 본을 따른 자’로 만들었다. 그 결과, ‘혼혈아’는 비록 모국(母國)에서 태어나고 모국어(母國語)를 사용했음에도, 예외적이고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국민이었다. 절대 다수의 한국인이 ‘한국 혈통(아버지)’을 계승한 ‘혼인 중의 자’로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현실에서, ‘혼혈아’는 외모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소수자였던 것이다. 반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의 혼인 중에 출생한 ‘혼혈아’는 법적 낙인으로 부터 면제되었다. 비록 외모는 구별되더라도, 대다수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 혈통(아버지)’을 계승한 ‘혼인 중의 자’로서 부가에 입적하여 부의 성과 본을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모두, 어머니가 ‘혼혈아’를 유기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통해 호적에 기재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낙인과 곤란이다. 반면 일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유기했고, 그럴 때 ‘혼혈아’는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해야 했다(④). 일가창립 수속은 성인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으므로, 많은 이들이 일정한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호적도 국적도 없는 상태로 지냈다. 또 다른 어머니들은 ‘혼혈아’를 유기하지 않고 키우면서도 출생신고를 포기했는데, 이 경우 역시 자녀는 무적(無籍) 상태에 처했다. 1959년 치안국이 ‘혼혈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20명 중 국적을 취득한 이는 325명, 수속중인 이는 5명으로, 무국적자가 68퍼센트에 달했다(김아람, 2014: 100).

1966년 『동아일보』는 ‘혼혈아’의 실태 파악이 어려운 이유로, “혼혈아가 대부분 사생아로 무적 아동이 많고, 그 어머니의 생활 근거가 유동적이며, 한국 사회가 혼혈아를 백안시하여 어머니는 그들 자녀에 관한 조사에 응하기 싫어한다는 사실 등에 기인한다”라고 지적했다.<sup>13)</sup> 상당수 ‘혼혈아’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무적자가 되는 상황은 1980년대 말까지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1987년 펄벅재단에 등록된 혼혈인 801명의 호적 관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이들이 친모 호적에 올라 있었고(278명, 34.7%), 그 다음으로 무적자(130명, 16.2%), 기타(129명, 16.1%) 순이었다(한경아, 1994: 24).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루베이커는 법적인(공식적인) 국적과 일상적인(비공식적인) 성원권을 구분하고 양자의 불일치와 긴장을 조명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혼혈아’의 법적 지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는 국적과 성원권 사이에 가족이라는 매개항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한국인은 가족관계에서의 지위, 곧 출생 신분을 매개로 국민이 될 수 있었는데, 법

13) 「또 하나의 사회문제 혼혈아 성년」, 『동아일보』, 1966. 4. 28.

률이 출생 신분을 위계화했으므로, 성원권 역시 위계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적-성원권’의 이원적 모델이 아니라, ‘국적-가족-성원권’의 삼원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혼혈아’의 불완전한 성원권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실천, 곧 구별되는 외모로 인한 차별과 배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부계제와 법률혼주의와 부계혈통주의에서 벗어난 가족은 모두 비정상적으로 낙인찍는 한국의 가족 이념과 그것을 구현한 법률에서 파생된 것이기도 했다.

### 3) 추방과 감시: ‘주권’과 ‘규율’의 대상으로서 ‘혼혈아’

부계가족 이념은 일상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혼혈아’에 관한 언론 보도는 종종 부계제의 필연성과 단일민족의 우월함에 대한 주장으로 끝맺었다. ‘혼혈아’는 부계가족의 탈선자이자 순혈성에 대한 위협이었고, 그들을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들의 진정한 혈통을 찾아 ‘아버지의 나라’로 입양하는 것이 최선으로 간주되었다.

첫째 호적부터 만들어야지요. 다음은 호적을 만들자면 성(姓)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으니 딱하고……. 모계(母系)를 따른다면 몰라도(그것도 안 될 말이지만) 우리나라 호적에 ‘스미스’니 ‘와싱턴’이니 할 수도 없고…….<sup>14)</sup>

혼혈아에 손가락질하는 것은 문명인의 수치다. (….) 하지만 혼혈을 수치로 아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 민족의 피에 대한 천시는 사대주의도 못 되는 노예근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엔 아직도 자존심이 강하다. (….) 어찌 자랑스럽지 아니한가.<sup>15)</sup>

모계사회로부터 부계중심사회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인류사회의 진화된 면이라고 본다면 혼혈아의 거주지 선택에 ‘파타 랜드’[fatherland-인용자]가 최우선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 아닐까.<sup>16)</sup>

실제로 ‘혼혈아’에 대한 최우선적인 정부 정책은 해외 입양이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12월, 대통령 취임을 앞둔 아이젠하워 장군이 방한하자, 대한적십자사 총재 구영숙은 “미국 정부에서는 이 아이들을 하루 빨리 자유스러운 나라에 다려다가 자유스러운 생활과 교육을 시켜”달라고 호소했다.<sup>17)</sup> 이승만 대통령 역시 1954년 1월 국무회의에서 “혼혈 고아를 양자, 양녀로 원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지시했다(김아람, 2014: 108). 이를 위해 사회부는 ‘혼혈아’의 전국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sup>18)</sup> 1954년 2월까지 파악된 ‘혼혈아’는 380명이었는데,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와 논의하여 “혼혈아 전원의 미국 이민”을 추진했다.<sup>19)</sup> 관련 정부 조직과 법령도 마련되었다. 1955년 제정된 보건사회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르면, 보건사회부 후생과의 주요 업무로 아동의 위탁보육 및 재활과 더불어 “혼혈아 입양”이 배정되었다.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9월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이 대한

14) 「요모조모」, 『경향신문』, 1958. 11. 11.

15) 「여적」, 『경향신문』, 1964. 6. 18.

16) 「형설수설」, 『동아일보』, 1959. 4. 23.

17) 「아 원사 내방에 기함」, 『동아일보』, 1952. 12. 8.

18) 「혼혈아 실태 월말까지 조사」, 『경향신문』, 1954. 2. 9.

19) 「전국의 혼혈아 미국 이민키로」, 『경향신문』, 1954. 8. 8.

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해외 입양이 전격 시행되었다. 보건사회부가 집계한 ‘혼혈아’ 해외 입양 통계를 살펴보면, 1955년 59명에서 1960년 638명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총 입양아 수는 3,525명이었다. 이 통계는 ‘혼혈아’의 인종을 백인계, 흑인계, 기타로 분류했는데, 1957년까지 가장 수가 적었던 기타가 1958년에는 흑인계를, 1959년부터는 백인계를 초과했다(보건사회부, 1961: 404-405). 1960년 보건사회부가 집계한 “혼혈아 실태표”에서 백인계가 746명, 흑인계가 285명, 기타가 44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입양통계에 기타로 분류된 입양아 중에서 ‘혼혈아’뿐만 아니라 다른 고아들도 포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가 통계 제목을 “혼혈아 외국 입양 상황표”라고 붙였으나, 이들을 모두 ‘혼혈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통계의 주요 범주가 인종이었다는 사실이 입증하듯이, 해외 입양 정책의 우선 대상은 ‘혼혈아’였다. 정부는 과도한 해외 입양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불구아나 혼혈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 입양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sup>20)</sup> 또한 언론은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혼혈아 수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다.<sup>21)</sup> 이렇듯 ‘혼혈아’는 결국엔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할 일시적 체류자로 간주되었다. ‘혼혈아’가 생모를 비롯한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고,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은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며,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질지 못한 모정”<sup>22)</sup>은 비판받았다.

그러나 ‘위안부’의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이 비현실적이었듯이, 모든 ‘혼혈아’를 해외로 입양하겠다는 정책 역시 실현 불가능했다. 해외로 입양되지 못한/않은 채 한국에 남은 ‘혼혈아’와 ‘혼혈인’은 가혹한 낙인과 차별로 고통받았다. 일례로 정부는 1961년 전국의 ‘장애아’ 수를 조사했는데, ‘혼혈아’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회적 장애아”로 분류되었다.<sup>23)</sup> 또한 정부는 1963년부터 과학적인 수사를 위해 범죄자 신상 카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항목 중 하나가 “출생성분”, 곧 “혼인 중, 혼인 외, 혼혈아, 사생아”였다.<sup>24)</sup>

성인이 된 남성 ‘혼혈인’은 병역으로부터도 면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1970년 해외 취업과 이민을 돕기 위한 혜택의 일환으로 구상되었다(김청강, 2014: 181). 1976년 2월 병무청이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행 병역의무 과정에서 혼혈아는 현역병 입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1970년대 초중반에 병역 면제가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이들의 예비군 편성도 면제할 것을 건의했는데, 그 사유를 “피부색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예비군 대원들 간의 인화 단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등 예비군 복무에 부적합한 자”라고 밝혔다(병무청, 1976). 이를 통해 ‘혼혈인’의 병역 및 예비군 면제는 이들을 배려한 혜택이었다기 보다는 이들이 일으킬 문제를 우려한 배제였음을 알 수 있다.

‘혼혈인’ 병역 면제 방침은 1984년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으로 명문화되었다(김청강, 2014: 182). 개정 제103조 1항 3호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혼혈아’ 외에도 보충역 편입 또는 방위소집 면제 대상은

20) 「외국 후원 의존 서 탈피」, 『동아일보』, 1976. 7. 15. 「여적」, 『경향신문』, 1979. 6. 6.

21) 「혼혈아의 교육문제」, 『동아일보』, 1966. 4. 29. 「6.25 스무돌에 되새기는 아물지 않은 전흔(3) 전재 고아」, 『경향신문』, 1970. 6. 24. 「그늘 속의 혼혈아」, 『동아일보』, 1974. 11. 5.

22) 「설 땅 찾는 응달의 혼혈아」, 『동아일보』, 1967. 6. 3.

23) 「장애아 실태를 조사」, 『경향신문』, 1961. 4. 9. 「좌담회 “불구자도 인간이다” 전국에 장애아동 8만」, 『동아일보』, 1962. 3. 1.

24) 「동기, 수단 등 분류」, 『경향신문』, 1962. 10. 8.

밝혔는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1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출생 신분 체계, 곧 앞에서 언급한 ②, ③, ④와 일치했다.<sup>25)</sup> 1991년 개정으로 ②는 삭제되었지만, 1994년 개정으로 ②와 ③이 결합하여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로 변경되었다. 이렇듯 출생 신분은 단지 호적의 기재 사항에 그치지 않았다. 피부색과 더불어 출생 신분은 범죄자를 분석하는 근거이자 병역 자격의 판별 기준, 다시 말해 실질적인 낙인과 차별의 장치였던 것이다.

또한 병역법이 성년에 이른 ‘혼혈인’을 ‘혼혈아’로 명시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혼혈인’과 ‘혼혈아’를 키워드로 신문 기사를 검색하면, 전자보다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6)</sup> 이러한 사실은 일차적으로 미군 주둔으로 출생한 ‘혼혈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미성년이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들이 성년에 이른 후에도 ‘혼혈아’로 지칭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심지어 신문에는 “성년 혼혈아”라는 모순적인 표현도 자주 등장했다.<sup>27)</sup> 이를 두고, 박경태(2016)는 한국에서 ‘혼혈인’이 “성인이 될 수 없는 존재, 완성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였다고 지적했다(201). ‘혼혈인’들이 한국 남성의 성인식으로 간주된 병역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 역시, 이들이 이 땅에서 시민이 아니라 아동의 지위에 머무른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푸코는 근대 권력이 주권(sovvereign power)에서 규율(discipline)로, 그리고 생명정치(biopoltics)로 진화해왔다고 주장했다. 고전적 권력 형태인 주권은 형법에 기초해 신민을 “죽이거나 살도록 내버려 둔다.” 규율은 17세기부터 형법 주변에서 발전한 감시, 격리, 교화기술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18세기에 출현한 생명정치는 인구를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계산하고 조절하며, 개인을 보살피고 인도한다(푸코, 2011: 17-91; 박정미, 2017). 1990년 대까지 한국의 ‘혼혈아’ 정책은 푸코식으로 말하자면 주권과 규율의 결합이었다. 정부는 ‘혼혈아’를 ‘내쫓거나 살도록 내버려 두는’ 정책, 곧 추방으로 일관하는 한편, 남은 이들은 배제와 감시, 규율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가혹한 조건에 노출된 ‘혼혈인’들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났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혼혈아’가 해외로 입양되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5천여 명에서 7천여 명 사이로 추정된다. 1982년 미국에서 미군이 주둔했던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미군이 유기한 자녀들이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자 약 3천 명이 이민했다. 1999년 펄벅재단이 집계한 ‘혼혈인’ 수는 613명이었으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박경태, 2016: 207-210). 그렇게 많은 이들이 떠났고, 남은 이들은 비록 국적은 한국이나 완전한 성원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낙인과 차별을 견디며 살아왔다.

### 3. ‘혼혈아’ 정책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으로

- 
- 25) 제103조 (수형자등의 보충역편입) ①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서 법 제5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의 가에 입적되지 아니한 자 3.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4.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5.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자나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 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는 자 6.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
- 26)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리>에서 해방 후부터 1999년까지 ‘혼혈아’와 ‘혼혈인’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전자는 979건, 후자는 261건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1974년 2월 이전 기사는 모두 해외 사례에 관한 것이었다.
- 27) 「전쟁이 낳은 혼혈아도 벌써 성년」, 『경향신문』, 1967. 8. 29. 「성년혼혈아 문제」, 『동아일보』, 1972. 7. 3. 「결혼 문제 고민하는 성년 혼혈아」, 『경향신문』, 1975. 4. 21.

## 1) 다문화가족의 구성과 '생명정치'

1980년대 후반은 한국 사회 변동의 거대한 분수령이다. 1987년 6월항쟁으로 오랜 군부독재가 종식되었고 1986년부터 1988년 사이 이른바 '3저호황'으로 경제 역시 크게 성장했다. 그 결과, 국제 이주 연쇄에서 한국의 지위도 변모했다. 그동안 주로 이민과 노동력 파견, 입양 등을 통해 잉여 인구를 해외로 송출해왔던 한국은 이제, 다른 국가, 주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이주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주는 크게 두 가지 형태, 곧 노동 이주와 결혼 이주로 구성되었다. 전자는 이른바 '3D 업종'으로 불리는 저임금 저숙련 직종에 집중되었고,<sup>28)</sup> 후자는 '농촌 총각'으로 표상되는 한국 남성의 배우자가 다수를 차지했다.<sup>29)</sup>

이러한 이주의 물결로, 한국인과 이주자 사이, 또는 이주자들 간에 출생하는 아동도 증가했다. 정부는 그중에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남성)와 내국인(여성)” 사이, 그리고 한국인 남성과 여성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새로운 유형의 혼혈인”에 관심을 기울였다(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82). 특히 이들이 취학연령에 이르는 시기가 도래하자, 이들에 대한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전경수 외, 2008: 19). 가정에 머물러 있던 아이들이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혼혈', '혼혈아', '혼혈인'에 대한 낙인이 극심한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혼혈인”을 지칭할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다. 이에 '코시안', '온누리안'이 간헐적으로 사용되다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로 수렴되었다(김민정, 2008: 91-92). '다문화가족'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공식 용어가 되었다.

'혼혈아' 정책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으로의 전환은 대단한 혁신이었다. 피의 경직성, 곧 '다 큰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불순해진다고 가정하는 배타적 순혈주의가 문화의 다양성, 곧 차이, 조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을 어머니에게서 분리하는 해외 입양에 집중한 반면, 후자는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과 가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것을 명시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1항은 이러한 지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혼혈아' 정책이 추방하고 규율하는 권력을 표상했다면, 다문화가족 정책은 보살피고 인도하는 권력의 등장을 알리는 징후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족 정책이 혈통주의와 결별한 것은 아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국민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했다(제2조). 여기서 국민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므로, 이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모계로 확장된 한국 혈통이다. 이렇듯 혈통의 중요성은 유지되었고, 따라서 '다문화'는 확장된 혈통주의를 지칭하는 일종의 '완곡어법'(euphemism)이었다. 또한 김혜순에 따르면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에서 '다문화가족'이라는 법적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별도의 정책

28) 1992년 65,673명이었던 등록외국인은 1999년 206,895명으로 증가했다. 그중 저숙련직 관련 비자(E9, H2, E10, D3) 소지자가 78,945명으로 38.2%를 차지했다. 2005년 등록외국인 수는 485,477명, 저숙련직 관련 비자 소지자는 224,732명으로 비율이 46.3%로 상승했다(조효래, 2017: 215-217).

29) 1994년 한국인 여성-외국인 남성 사이의 국제결혼은 3,544건, 한국인 남성-외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은 3,072건으로 전자가 더 많았으나, 이러한 추세는 이듬해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 1995년 전자는 3,128건, 후자는 10,365건이었다. 전자는 2005년 11,637건으로 서서히 증가했으나 후자는 2005년 30,719건으로 정점에 이르렀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대상으로 확립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김혜순, 2014: 304-305). 이렇듯 한국에서 ‘다문화’는 ‘가족’과 결합함으로써 그 영역과 함의가 가족으로 국한되었다(김정선, 2011: 224).

다문화가족 정책은 또한 ‘혼혈아’ 정책의 문제 설정과 완전히 단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후자의 그림자는 전자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2006년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이화시정위원회)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주의 결과로 출생한 “새로운 유형의 혼혈인”을 방지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 장기적 사회불안 요인이 되어 프랑스의 이민자 소요사태 같은 인종갈등을 야기”할 것을 우려했다(시정위원회, 2006: 74). 다시 말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이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혼혈인’ 혈통의 절반은 한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불안과 긴장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 2) 지배적 가족 이념과 다문화가족: 타협과 긴장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혈통주의를 모계로 확장했다. 그보다 10여 년 전인 1997년에는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이 반세기 만에 폐지되었다. 개정 국적법 제2조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양계혈통주의 원칙을 확립했다. 이로써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와 정식으로 혼인한 다문화가족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에게 곧바로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sup>30)</sup> 국적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이 폐지된 것이다. 이로써 외국인 남성의 자녀를 출산한 한국인 여성과 그 자녀의 한국 국적은 더이상 ‘혼외 출산자’ 또는 아버지로부터의 ‘유기’를 나타내는 표식이 아니게 되었다.

2005년에는 호주제 역시 약 반세기 만에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가(家), 호주와 가족의 구분, 입적, 복적, 창립, 분가, 폐가 등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호적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로 대체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가에 기초한 호적부는 1인1적제인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 자녀가 출생하면 부가 또는 모가에 입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대신,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은 기존의 부계제와 법률혼주의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개정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부계제가 여전히 원칙으로 계승되었다. 이하는 역시 그러한 원칙에서 벗어난 자들을 포함하기 위한 보충조항이었다. 동조 2항과 3항은 각각 “부가 외국인인 경우”와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고, 4항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도록 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역시 출생신고 시 여전히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했다(2항 2호).

30)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반귀화에 필요한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귀화할 수 있었다(국적법 제5조, 제6조).

이에 따라 국민은 여전히 출생 신분에 따라 위계화되었다. 최상층에는 ①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혼인 중의 자가 위치했고, 그 아래에는 ②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혼인 외의 자, 또는 ③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혼인 중의 자가 자리 잡았다. 그 아래에 ④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혼인 외의 자가, 마지막으로 ⑤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한 자가 차례로 배치되었다. 이 모든 경우가 국민으로 인정되지만, ①이 압도적 다수다.

이렇듯 국적법의 개정으로 부계혈통주의는 양계혈통주의로 대체되었으나, 부계제와 법률혼주의는 유지되었고, 다문화가족 정책 역시 그 질서 속에 배치되었다. 다문화가족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인 아버지-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자녀는 다른 다수의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①의 지위를 점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아버지-한국인 어머니의 자녀인 경우 ③으로서, 부모의 합의에 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이들과 더불어 규모와 지위의 측면에서 소수자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물론 생물학적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아동일지라도 ②, ④, ⑤는 부계제 가족의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혹과 낙인, 차별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한국인 아버지-결혼이민자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은 한국의 지배적인 가족 질서인 부계혈통주의, 부계제와 법률혼주의와 충돌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중반 여성 결혼이민자가 증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 주도형'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사업이 추진되었다(김현미, 2006: 17-19). 이와 같은 정책은 농촌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부계제 가족을 '신부 유입'(bride drain)을 통해 재건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중앙 정부가 추진한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요 대상 역시,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시정위원회 2006년 보고서의 편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은 66쪽인 반면, "주한미군 관련 혼혈인,"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2세"를 비롯한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은 22쪽에 불과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일차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다수이자 현재적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다른 "혼혈인 및 이주자"와 달리, 법률혼주의, 부계혈통주의, 부계제 가족제도와 유일하게 타협 가능한 존재였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남성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이고, 그들이 출산한 자녀들은 당연히 한국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 정책이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에 집중된 것은 인구 위기와도 관련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정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문경희, 2006; 김희정, 2007; 김현미, 2008). 그 결과,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정책의 중심이 되었고, 이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를 가부장제적 가족 질서로 통합하여 그것을 공고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를 내포했다(김정선, 2011: 215). 김현미(2008)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아이를 출생하는 여성"으로 간주되고 "한국 아이의 '엄마'의 자격으로서만 공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들의 "모성의 도구화"가 가족계획 시기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69). 이렇듯 다문화가족 정책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출산을 '외주화'함으로써 부계제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성격을 지녔다.

결국 여성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혼혈아' 정책과 상당히 다른 듯 보이지만, 한국의 지배적인 가족 이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실상 동형적이다. 미군 '위안부'의 혼외 출산은 경원시 되었으나, 여성 결혼이민자의 혼내 출산은 독려되었다. '혼혈아'는 한국 혈통(아버지)이 아닌 혼인 외의 자이자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자이므로 '아버지의 나라'로 추방되어야 했지만, 다문화가족 자녀는 한국 혈통(아버지)인 혼인 중의 자이자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자이므로

로 ‘아버지의 나라’에 통합되어야 했다. ‘혼혈아’ 정책이 다문화가족 정책으로 손쉽게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동형성 덕분이다.

그러나 미군 ‘위안부’의 혼외 출산을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했듯이, 결혼이민여성의 혼내 출산을 독려함으로써 인구 위기를 타개하려는 발상 역시 비현실적이다. 서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산율은 전체 평균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자녀 양육 비용이 크고 임금노동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다문화가족의 출산 역시 제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출신국의 가족 문화에 따라 모계가족과 연대를 중시하고, 이것은 한국의 부계제 가족과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황정미, 2012: 129). 자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려는 여성 결혼이민자와 남편 또는 시가의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은 1995년 이전에는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았음에도 전혀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시정위원회 보고서의 대책 역시 소략했다. 또한 대다수 여성 결혼이민자-한국인 남성의 결합에서 결혼이 이민의 전제가 되는 반면, 외국인 남성-한국인 여성 사이의 결합은 사실혼도 많아서 공식 통계로 포착하기 어렵다. 역으로, 1997년 개정 이전의 국적법은 외국인 남성-한국인 여성 간 법률혼에 장애가 되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거주 기간이 필요했고,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그들의 자녀는 ‘혼인 외의 자’로 어머니 호적에 입적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김민정, 2008: 94).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에게는 조화로웠던 부계혈통주의와 법률혼주의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려는 한국인 여성에게는 충돌했던 것이다.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남성이 불법체류자인 경우 혼인신고로 신분이 드러나 한국 체류가 곤란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의 정책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남성) 이주노동자에게는 엄격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여성-외국인 남성이 법률혼을 통해 무사히 다문화가족에 정착하더라도 차별은 존재한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중심이다 보니, 남성 결혼이민자 가족은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김이선, 주유선, 방미화, 2012; 김민정, 2018: 125). 또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대체로 어머니가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 결혼이민자 가족은 한국의 지배적인 부계제 가족 이념과 긴장을 초래하기도 한다(김민정, 2008; 김민정, 2018). 이렇듯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국민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성원권은 한국인 부모의 젠더에 따라 차등이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 아버지의 혈통이 한국인 어머니의 혈통보다 더욱 우대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부계혈통주의가 양계혈통주의로 확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전자가 후자를 압도한다.

다문화가족의 성원권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결혼이민자의 국적(인종)과 계급이다. 한국인 아버지-결혼이민자 어머니 가족은 부계제 가족 이념과 부합하지만, 만일 아버지의 계급적 지위가 열악하고 어머니가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면 자녀의 성원권은 불안정하다. 반면 결혼이민자 아버지-한국인 어머니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선진국 백인 출신이고 중산층 이상의 직업을 가졌다면 자녀의 성원권은 안정적일 수 있다. 전자는 전형적인 다문화가족으로서 동정과 시혜의 대상인 반면, 후자는 ‘글로벌 패밀리’로서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정혜실, 2020).

### 3) ‘다문화가족’에서 ‘다문화사회’로: 가족, 사회, 성원권의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가족은 국적과 성원권의 기초였다. 이처럼 가족에 의

해 매개되는 국적과 성원권은 한국인과 혼인이나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이주자들을 제외한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 정책을 가족에 한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 난민, 새터민, 화교는 배제했다(김정선, 2011: 215). 또한 성인보다 더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다양한 ‘이주 배경 아동’ 중에는 출생신고조차 못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과거 무적(無籍) ‘혼혈아’와 마찬가지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음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김철효 외, 2013; 신윤정 외, 2018)

다문화정책이 가족에 한정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이들에게도 한계가 작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정책은 대상을 가족적 존재, 곧 아내(어머니)/남편(아버지), 그리고 자녀로 상정한다. 또한 이미 지적인 것처럼, 다문화프로그램의 상당한 비중이 결혼이주자 어머니와 자녀에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자녀가 장성한 후 ‘시민’으로서 완전한 성원권을 향유하고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7년부터 다문화가족 출신 남성이 자원에 의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김민정, 2018: 128). 남성 시민권의 관문인 병역이 ‘혼혈인’은 배제했으나 다문화가족 자녀는 포함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정책이 가족의 경계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교육 사업은 대상을 이주민으로 상정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주요 목표로 삼아왔다. 그 결과, 이주민이 아닌 한국인 대상 교육은 비중이 낮은 편이다. 황정미는 이와 같은 “다문화 시민 없는 다문화교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반인종주의, 반차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황정미, 2010: 108-115).

끝으로 ‘혼혈인’ 가족 및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의 성원권도 위계화하는 법률혼주의와 부계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혼인 외의 자’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자’는 과거처럼 명시적 차별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구분이 유지되고 있는가? 현실에서 이미 붕괴되고 있는 부계제와 법률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법적 장치인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문화’된 법조문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규범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2014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안,<sup>31)</sup> 2017년 출생 신고 시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구분을 폐지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sup>32)</sup>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부성우선주의 폐지 권고,<sup>33)</sup>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sup>34)</sup>는 매우 유의미하다.

여성의 출산과 모성을 부계혈통주의, 법률혼과 부계제 안으로 밀봉하려는 ‘한국적’ 가족 이념은 다양한 ‘비정상적’ 가족에 대한 낙인과 더불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초저출산율로 귀결되었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통해 그것을 심폐소생하려는 시도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제는 그저 그것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 할 때다. 장경섭(2011)이 주장한 대로 ‘가족출산’이 ‘여성출산’으로 변모할 때, 다시 말해 여성이 완전한 시민으로서 혈통, 계보,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아동이 부모의 인종과 국적, 출생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때, 그 때야 비로소, 저출산, 아니 저출생과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될 것이다.

31) 「혼인신고 않고 사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생활동반자법' 발의」, 『허프포스트코리아』, 2014. 10. 22.

32) 「“혼외자 표시는 주홍글씨” 출생신고서에서 사라지나」, 『한국일보』, 2017. 6. 25.

33) 「법무부 위원회 "아버지 성 무조건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 『프레시안』, 2020. 5. 8.

34) 「7번 좌절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평등법'은 다를까?」, 『노컷뉴스』, 2020. 7. 1.